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8627 판결 [공사대금 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솔이, 김영진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피플

담당변호사 김철완

변론 종결2024. 11. 6.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1,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3.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1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인근의 'D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① 1차 공사대금 162,000,000원, ② 2차 공사대금 27,500,000원(= 공사대금 25,000,000원 + 부가가치세 2,500,000원), ③ 3차 공사대금 9,149,120원의 합계 198,64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1차 공사대금 162,000,000원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2. 3.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인근의 'D공사'를 공사기간 2023. 2.부터 2023. 3.까지, 공사대금 16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3. 5.경 위 1차 공사계약을 완료한 사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공사물량이 감소된 사실, 피고가 수급한 원도급공사 중 위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은 7,080,015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E이 2023. 5. 18. 피고 대표자 F에게 2차 공사대금 2,500만 원의 지급요청을 위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수량감소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량 및 대금 감액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차 공사대금 중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수량감소를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감액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위 공사물량 감소에 따라 감액되어야 할 1차 공사대금은 6,658,728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차 공사대금 중 155,341,272원(= 위 162,000,000원 - 감액분 6,658,728원)이 인정된다.

나. 2차 공사대금 27,500,000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5,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2차 공사대금으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위 25,000,000원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1차) 공사대금으로 '162,000,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점(원고는 1차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다) 등을 고려하면, 2차 공사대금 25,00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차 공사대금 25,000,000원이 인정된다.

다. 3차 공사대금 9,149,120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차 공사대금으로 9,149,12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의 기지급금액에 관하여

을 제1, 10,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2. 10.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원고에게 직접 또는 원고의 장비대금 및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69,028,6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461,712원(= 1차 공사대금 155,341,272원 + 2차 공사대금 25,000,000원 + 3차 공사대금 9,149,12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69,028,680원) 및 이에 대하여 3차 공사완료가 확인된 2023. 11. 22. 다음 날인 2023.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아영